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2.27)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('20.12.24.~'21.1.3.)에 맞추어 **6일간 연장**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또한,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12.29(0시) ~ 2021년 1.3(24시)까지

- ~ ○ 대상 지역 :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
*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

①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 시설 : 식당 · 카페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-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· 음료 ·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· 배달만 허용

붙임 1. 수도권 식당 ·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3.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끝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

주무관 **박혜수** 과장 **전결 2020. 12. 28.**
나성화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1569 (2020. 12. 28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